



“ 새로운 건설 융합을 선도하는 스마트CM ”

한국CM협회

수 신 : 수신자 참조

참 조 : 교육담당과장

제 목 : 제167차 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1) 실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CM활성화 촉진 및 CM역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7차 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1)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분야 임직원들이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고용노동부 신고에 필요하오니 우선 교육참가 신청서와 훈련위탁계약서를 2013. 7.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동 서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의 협회소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정명 : 제167차 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1)

나. 교육기간 : 2013. 7. 8(월) ~ 7. 12(금) 매일 09:00 ~ 17:00

다. 장 소 : 서울 제1교육장 (약도 붙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19-34 반도빌딩4층

/ 사당역(2호선/4호선) 10번 출구 또는 이수역(7호선) 7번
출구로 나오신 후 도보로 4~5분 거리]

라. 교육인원 : 60명 (선착순 모집 / 수강료 입금 순)

마. 수 강 료 : 220,000원 / 1인

바. 신청기한 : 2013. 7. 5(금)

사. 교육이수자 특전

(1) 특급기술자로서 CM용역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로
참여하여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 경과시마다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으로 인정

(2) 건설기술자 승급교육으로 인정

(3) 감리원 의무교육 이수 인정

- (4) CM, 감리(주택법 감리포함),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평가점수 부여
- (5)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학점인정(최대 60점) 및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학점인정(최대 90학점, 1주 35학점)
- (6) 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교육비중 일부 환급
- (7) 지자체공무원 교육훈련평정 가점부여(해당지자체에서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 고지하였거나 교육명령을 받은 경우)
- (8)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으로 인정
- (9) 본 과정 수료 후 한국CM협회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아. 교육안내 및 접수처 : 한국CM협회 교육훈련본부

- (1) 전화 : 02-585-4712/3, 팩스 : 02-585-2689
- (2) 홈페이지 : www.cmak.or.kr

자. 참고사항 :

- (1) 교육장 주차비가 1일 8,000원(단, 교보생명건물주차장입구에서 종일 주차라고 사전 통보 시 인정)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바람
- (2) 국토교통부 교육지침(대리출석행위 방지)에 따라 교육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바람
- (3) 무단결석 및 무단조퇴 등을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함
- (4) 교육장과 협회의 위치가 다르므로 교육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람

- 붙임 : 1. 세부교육내용 1부.
 2. 교육참가신청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각 1부.
 3. 교육장약도 1부. 끝.

수신자 : 붙임

한국CM협회장



담당 주임 박 현 석 과장 김 강 욱

시행 교육훈련본부 - 221 (2013. 6. 19)

우 137-84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4층

전화 02-585-4712

전송 02-585-2689

<http://www.cmak.or.kr>

phs4784@cmak.or.kr

< 붙임 >

수신자 : 서울시청(시설안전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주거재생기획관, 도시계획국),
서울시 종로구청(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외 24곳,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기획조정관, 도시계획국 등 15곳)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LH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총 256곳

< 부 록 1 >

세 부 교 육 내 용

교과내용	교과시간	비고
1. CM제도 및 활용방안	3.5	
2. CM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요령	3.5	
3. 사업타당성조사 분석 및 검토기법	3.5	
4. 입찰 및 계약관리기법	3.5	
5. 건설클레임 및 분쟁의 해결수단과 절차	3.5	
6.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검토기법	3.5	
7. 공정관리기법	3.5	
8. 설계조정 및 연계성 검토요령	3.0	
9. 현장관리실무	3.5	
10. CM수행사례	3.0	
11. 과정평가	1.0	
합 계	35.0	

※ 본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1) 참가신청서

한국건설관리협회 귀중

접수번호 :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 받을 주소 우편번호)	업 태 / 종 목	

※ 상기 사항은 계산서 발급에 필요하오니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자 명 단

부서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분야/자격증	현재등급	E-mail	교육기간
				유선전화	경력관리기관	승급등급		
								2013.05.20. ~05.24

연 락 담 당 자(교육)

부 서 명	직 위	성 명	휴대전화	유선전화	FAX	E-mail

- 참가를 희망하시는 일정(교육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료증 발급에 필요하오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기술자격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안전관리, 교통, 환경, 전기, 금속, 전자, 광업자원, 산업응용, 화공및세라믹, 섬유, 해양」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기술자격증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현재등급”을 기재하되 승급대상자의 경우 “승급등급”(승급하고자 하는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 구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토목/기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현재등급:초급, 승급등급:중급
- 교육신청은 우편, Fax로 받으며 마감은 접수 선착순으로 합니다.
신청 : Fax 02-585-2689, 확인 : TEL 02-585-4712 (전송 후 접수 확인 바랍니다.)
- 교육비는 아래의 구좌로 입금하신 후,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064-22-00743-0 외환은행 서소문지점 (예금주:한국건설관리협회)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이며 수강료는 1인당 220,000원으로서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대상자에 한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교육비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는 제1교육장[사당역(2호선/4호선) 10번 출구 또는 이수역(7호선) 7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농협건물 4층]에서 실시합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건설기술관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시 교육비 지원에 따른 노동부 인지 제68500-695호 (2001. 5. 28)에 의거 “한국건설관리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술자 위탁교육훈련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중·고급과정/종합교육1)”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교육훈련대상자) 교육훈련대상자는 “갑”이 정한 서식에 의거 “을”이 제출한 교육참가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인원) 계약기간 및 인원은 “을”의 소속 재직자가 작성·제출한 교육훈련 위탁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과정별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탁신청계약순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3조(교육훈련비) ①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대상자 1인당 220,000원으로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온라인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비환급) 교육비의 환급액은 노동부(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생평가 및 수료) ① 교육생평가는 객관식 필답고사에 의한 학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80%, 근태평가를 20%로 하여 총득점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자로 한다. 단, 이수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으로 한다.
③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갑”의 학사관리기준에 따른다.

제6조(성실의무) ① “을”은 “갑”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교육훈련비를 “을”에게 환불한다.
② “갑”의 학사관리기준을 위배하여 퇴출당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이 계약서 상의 조문해석과 관련하여 쟁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영지침에 의거 제정한 “갑”의 학사관리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갑”에게 위탁한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교육참여 의무를 이행하고, “갑”은 교육훈련이 최대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 년 월 일

갑 : 한국건설관리협회
회장 배 영 휘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 98-013078-5-440-1203



을 : 회사명
대표자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 (인)

교 육 장 약 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19-34)

● 지하철 이용시

사당역(2호선/4호선) 10번 출구 또는 이수역(7호선) 7번 출구로 나오신 후 도보로 4~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버스 이용시

사당동 "방배경찰서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방배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9502, 간선버스: 363, 지선버스 : 4212, 4418, 4425, 5412, 5524, 5528,

마을버스 : 동작09, 동작20, 서초06

※ 기타 용인, 수원, 화성 등에서 오실 경우 사당역까지 오시는 버스를 이용하시어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기차 / KTX / 고속버스 이용시

기차 / KTX 이용시 : 서울역(4호선) → 사당역(4호선) 10번 출구

고속버스(강남터미널) 이용시 : 고속터미널역(7호선) → 이수역(7호선) 7번 출구